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 시 지방세 감면 요건 명확화(안 규칙 제7조, 제8조)
- 세목, 법인 및 공장 여부와 관계없이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대도시”를 각각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도시 외”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제7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 과밀억제권역 -----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1. 과밀억제권역 -----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2. ----- 과밀억제권역 -----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 --
3. <u>대도시</u>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3. <u>과밀억제권역</u> ----- ----- ----- ----- -----
4. <u>대도시</u>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u>과밀억제권역</u>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u>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u>)	제8조(<u>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u>) ① (현행과 같음)
① (생략)	② ----- ----- ----- ----- -----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1. 2. (생략)	3. <u>과밀억제권역</u> 외-----
3. <u>대도시</u> 외에서 그 사업을 시	

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 -----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3853